

#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5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,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'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'를 추가 설치·운영할 예정이며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학대피해아동쉼터
- 소재지 : 서울 강서구 화곡로
  - ※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자 함
- 시설규모 : 108.81㎡(SH임대)
- 공간구성 : 침실, 거실, 주방, 화장실 등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5년 (2021. 1. 1.~2025.12.31.)
- 위탁업무
  -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  - 피해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
  - 상담및치료: 심리검사, 개별심리치료, 집단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및병원치료
  - 교육 및 정서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- 소요예산 : 276,735천원('21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 위탁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4.
  -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(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·사회·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,

-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육, 상담치료, 교육 및 정서지원 등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어려움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(위탁운영)
  -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  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(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
  -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아동 생활지원
3. 상담 및 치료
4. 교육 및 정서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1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김은경 (☎ 2133-5183)